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재나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자 2021재나268 결정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재다1721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나1210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211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가단188227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기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준호

피고보조참가인 1.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6.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가단188227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2112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229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10나1210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88.9㎡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10. 접수 제11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2. 1. 17. 서울 종로구 C 대 8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2. 8. 23. 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일자 2002. 8. 24.자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2002. 4.경 D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38,870,320원(이하 '1차 체납조세'라 한다)이 체납되자 위 신탁등기 이전인 2002. 7.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1차 체납조세는 위 신탁등기 이후인 2002. 10. 2.과 2002. 10. 11. 모두 납부되었다.

한편, D은 위 신탁등기일인 2002. 8. 24. 종로구청장에게 14건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8.경까지 22건의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2004. 7.경 체납된 취득세와 주민세 등이 24건 6억여 원(이하 '2차 체납조세'라 한다)에 이르렀다.

3)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04. 7. 9. 2차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압류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11. 10.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공매통지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 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고, 200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05. 1. 19. 공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은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의 원인이 된 1차 체납조세는 공매개시 이전에 모두 납부되었고 2차 체납조세는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 D의 2차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위 공매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을 대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제1심판결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3. 10. 접수 제11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88227)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

② 1차 체납조세는 공매개시결정 이전에 모두 납부하였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2차 체납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2002. 8. 24. 또는 그 이후 도래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일인 2002. 8. 24. 이전에 도래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환송전 판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전 판결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6나21127)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의 기준일을 등기부에 기입된 시기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은 2차 체납조세의 발생 이후인 2002. 8. 27.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환송판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환송판결 법원(대법원 2007다5229)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의 이전 시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하며,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마. 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나12106)은 하자 있는 공매처분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이 취소확정된 이상 위 공매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와 같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의 이전 시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의미하며,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더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법원(대법원 2010다37936)은 2010. 8. 1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8. 24.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①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D의 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허사업 제한요청이 있었으며, 공매통지취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5.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을 취소한다는 허위의 결정서를 작성하였고, ② 원고의 대표이사 또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허위의 재결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원고의 대표이사가 그 후 2018. 7. 20.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D의 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재심대상판결 법원에 이와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은 ① 서울특별시에 공매처분의 취소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② 서울특별시장의 공매통지 취소만으로는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③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공매통지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 ④ 1차 체납조세를 납부하여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각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5. 18.

대법원에 환송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1. 25.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중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송판결을 재심의 대상으로 삼아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21. 11. 29. 이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늦어도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6, 7호에 관한 주장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착오로 잘못 인식하고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의 제1, 2주장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특별시 담당공무원과 원고의 대표이사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이 판결의 증거로 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 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변론을 함에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 또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본문과 각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후 제3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심리불속행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제3주장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 제3주장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주, 판사 김형배, 판사 김제욱